

18. 세르비아(Serbia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22년(1937년 시행)
- 현행법 : 2003년(연금과 장애보험), 2004년 (사회보험징수), 2009년 (재정)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.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근로자, 자영자(농업인 및 계약직 근로자 포함)

4. 자원조달

- 가입자 : 소득의 14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국민전월평균임금의 35%.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국민전월평균임금의 5배
 - 국민월평균임금 : 65,866 dinars
- 자영업자 : 소득의 26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국민전월평균임금의 35%.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국민전월평균임금의 5배
 - 국민월평균임금 : 65,866 dinars
- 사용자 : 임금지급총액의 12%; 새로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험료율 감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국민전월평균임금의 35%.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국민전월평균임금의 5배
 - 국민월평균임금 : 65,866 dinars
- 정 부 : 결손액 납부;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.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가입기간 15년 이상의 65세(여자는 62세) 도달자
 - 가입기간 40년 이상의 53세(여자는 53세) 도달자
 -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여성의 경우 지급개시연령은 2020년까지 63세로 연간 6개월씩 단계적으로 상향. 그 이후부터는 2023년에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연

간 2개월씩 단계적으로 상향.

- 45년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연령 상관없이 지급
- 조기연금 : 가입기간이 최소 40년 이상의 60세 남성, 가입기간이 최소 38년 이상의 56.4세 여성. 남녀 모두 2023년까지 60세로 점차적 상향. (여성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2023년까지 40세로 점차적으로 상향)
- 노령연금은 상호협정에 의해 해외송금 가능

○ 장애연금

- 정상퇴직연령 미만으로 소득활동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
- 요구되어지는 보험료 가입기간은 연령에 따라 다름
 - 최소 1년 이상(20세 이전 장애 발생), 2년 이상(20 ~ 24세 사이 장애 발생), 3년 이상(25 ~ 29세 사이 장애 발생), 최소 5년 이상(30세 이후 장애 발생)
- 산재나 직업병에 의해 발생한 장애는 최소 가입기간 없음
- 58세 미만의 가입자는 장애 정도(근로 능력)의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재심사 받아야 함
- 신체장애현금급여 : 산재나 직업병에 의해 발생한 장애가 최소 30%이상인 경우 지급
- 상시간병수당 : 가입자가 일상생활에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급
- 연금은 상호협정에 의해 해외송금 가능

○ 유족연금

- 가입기간 연금수급자 또는 5년 이상의 가입자가 사망시 지급
- 수급자격이 되는 유족범위
 - 장애 또는 15세(학생은 26세, 장애아는 연령불문)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망인이 53세(홀아비는 58세) 이상인 경우
 -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피부양자 어머니
 -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피부양자 아버지
 - 15세 미만의(학생일 경우 26세,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) 자녀
 - 피부양자인 손자녀, 형제 및 자매
- 사망자가 결혼한 시점이 65세 이상(여성은 60세)일 경우, 홀아비(미망인)는 반드시 사망자와 최소 2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하였거나 사망한 배우자 사이의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함
- 미망인의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은 중단되지 않음
- 유족연금 수급자가 고용되어 근로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자로 일할 경우, 지급 정지됨

- 유족 자신의 연금 수급권 발생시, 하나의 연금만 수령 가능
- 급여는 상호협정에 의해 해외송금 가능
- 장제비 :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비용을 치른 자에게 지급함
 - 장제비는 상호협정에 의해 해외로 지급 가능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연금은 가입개월수(45세까지), 소득점수(연간평균임금 대비 개인 총임금 비율), 일반적인 점수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
 - * 일반적인 점수 가치는 1점당 772.31 dinars (2017년 12월 기준)
- 조기연금 : 퇴직연령 도달 전 청구시 1개월 당 0.34%씩 연금액 감액(최대 20.4%까지)
- 지급 횟수 : 월 2회
 - 이전에 자영업을 하였던 자는 한 달에 1회 지급
- 급여 조정 : 직전 6개월간 소비자 물가변동 기준으로 매년 2회 조정(4월, 10월)

○ 장애연금

- 연금액 산정방식은 노령연금과 동일
- 신체장애현금급여 및 상시간병수당 : 매달 지급
- 지급 횟수 및 연금액 조정은 노령연금과 동일

○ 유족연금

- 유족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급자격이 되는 유족에게 균등지급
 - 1인인 경우 사망자 노령연금의 70%, 2인은 80%, 3인은 90%, 4인 이상은 100%. 완전고아인 경우에 부모 모두의 연금을 합산하여 지급(1인 140%, 2인 160%, 3인 180%, 4인 이상 200%)
- 최저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노령연금액임
- 급여 조정 : 노령연금과 동일
- 장제비 :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식을 치른 자에게 지급하며, 수급자 사망 전 최종 분기 평균연금의 최고 150%까지 지급

7. 관리운영기관

- 사회노동부(Ministry of Social Security and Labor)
 - <http://www.minrzs.gov.rs/>
 - 전반적인 감독

- 연금 및 장애 보험기금(Republic Fund for Pension and Disability Insurance)
 - <http://www.pio.rs/>
 - 급여 운영 및 관리

- 재무부 산하 세금관리처 (Tax Administration under the Ministry of Finance)
 - <http://poreskauprava.gov.rs/>
 - 보험료 징수

- 사회보험청 (Institute for Social Insurance)
 - <http://www.zso.gov.rs/>
 - 국제사회보장협정 시행 및 관리

<2018년 ISSA 자료>